

●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3-304호

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행정소송(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처분 취소 사건)에 대하여 아래의 공고 대상자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성력*에 의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 후 원상회복 명령(3차)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하고자 합니다.

*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, 처분청의 취소,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행위없이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됨.

2023년 12월 29일

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
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로점용(연결)허가 원상회복 명령(3차) 공시송달

1. 공고사유 :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로점용(연결)허가 원상회복 명령(3차) 송달불가
2. 공고기간 : 2024. 1. 05. ~ 2024. 1. 19. (15일)
3. 공고대상자 : 국도7호선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피허가자
임**

4. 공고내용(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 참조)

가. 귀하께서 우리 사무소에 허가를 득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본 허가 건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이에 따라 「도로법」 제73조(원상회복)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구역 내 설치한 진출입로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(3차)하오니, 귀하께서는 2023. 12. 26(화)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문서는 귀하께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기타 궁금하신 점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(☎054-260-2531, 25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(3차) 공문 1부. 끝.

[붙임]



국토교통부

포항국토관리사무소



수신 임 씨

(경유)

제목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(3차)

1.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.
2. 귀하께서 허가 받은 국도7호선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근린생
활시설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(허가번호: 포항21-64호)건과 관련하여,
3. 본 건은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
며, 이에 따라 「도로법」 제73조(원상회복)에 의거하여 도로구역 내 설치한 진출입로에
대해 원상회복을 명령(3차)하니, 귀하께서는 2023.12.26(화)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만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「도로법」 제72조, 제100조 및 제114조에 의
거 변상금,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등 행정조
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
다. 끝.

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


주무관 손민석 도로안전운영 전결 2023. 10. 24.
과장 황동모

협조자 주무관 유지혜

시행 도로안전운영과-6599 (2023. 10. 24.) 접수

우 375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길 14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/ <http://www.molif.go.kr/broom>

전화번호 054-260-2531 팩스번호 054-260-2531 / ccmnlid@moll.go.kr / 대국민 공개

"2020 부사제 제 244호인 바에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."